



제334회 정례회

2014.09.16.

행복한 도민, 신뢰받는 의회

전문위원 검토보고

○ 충청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

교육위원회 전문위원

충청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14년 09월 03일

○ 회부일자 : 2014년 09월 11일

3. 제안이유

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 참여절차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5조)

나. 의견수렴 방법 및 제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6조 및 제7조)

다.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 및 제10조)

라. 위원회 구성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11조~제15조)

마. 위원회 위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16조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

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,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 안 제5조에 교육감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 방향,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,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으며,
-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여론 수렴을 위한 설명회, 공청회, 토론회와 필요한 경우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하고, 주민의 의견 제출 절차를 정함.
- 안 제9조부터 제18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, 기능, 구성 및 임기, 위원장의 직무, 분과위원회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조례안이 안전행정부에서 제공한 「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모델안」을 기초로 제정하여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,
- 안 제2조에서 ‘주민’의 정의를 “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사람”으로만 정하여 기 제정된 타 시·도의 조례¹⁾나 조례 모델안²⁾에서 주민의 정의를 폭 넓게 하여 의견 수렴 범위를 다양화 한 것에 비하면 도교육청은 타시·도 전입 학구(군) 학부모와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기업활동을 하는 실업가의 의견 제시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모델안의 취지에 불 부합 하는 면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.

1) 예시: ① 00도 교육청 관할 학교의 학부모, ② 00도교육감 관할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

2) 예시: ① 00시(도)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, ② 00시(도)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

관 계 법 령 발 취

□ 지방재정법

[시행 2014.11.29.] [법률 제12687호, 2014.5.28., 일부개정]

제39조(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5.28.>

[시행일 : 2014.11.29.] 제39조

□ 지방재정법 시행령

[시행 2014.8.7.] [대통령령 제25532호, 2014.8.6., 타법개정]

제46조(지방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절차)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
 2.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
 3. 사업공모
 4.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.
- ③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·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·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